

**경찰의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의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김 학 신

<목 차>

I. 서론	1
II. 실종아동에 관한 일반적 고찰	4
1. 실종아동의 개념	4
2. 실종아동의 유형 분류	7
3. 실종아동의 실태 현황	10
4. 경찰의 실종아동 수사	14
가. 앰버경보 시스템(Amber Alert System)	14
나. 실종아동 프로파일링(Profiling)	17
다. 얼굴변환(Age-progression) 프로그램	18
라. 실종아동의 전담 수사 부서	19
III. 외국의 실종아동 관련 수사 제도	20
1. 미국	20
가. 미국의 아동실종 보호법체계	20
나. 실종아동 사건의 수사체계	23
다. 국가 실종 및 착취 아동센터(NCMEC)	24
2. 캐나다	25
가. 캐나다의 아동실종 보호 체계	25
나. 실종아동 사건의 수사체계	28
다. CFC (Child Find Canada)	28

3. 벨기에	29
IV. 경찰의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	30
1. 실종아동 수사시 관련 법·제도의 미비	30
2. 경찰 인력의 부족	31
3. 실종 아동 관련 범죄 자료와 연구의 부족	32
4. 실종사건 수사에 필요한 협조의 미비	33
5. DNA 확보의 어려움	35
6. 실종 사건 전문가의 부족	36
V. 실종아동 사건 관련 처리 대책방안	38
1.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보호시설의 적극적인 수색	38
2. 엠버경보시스템(Amber Alert System)의 활성화	39
3. 민·관의 원활한 협조·공조체제 구축	40
4. 실종아동을 위한 민간 조사관제 도입	41
5. 아동관련 주변 시설에의 광범위한 CCTV 설치	42
6. 스마트 폰을 이용한 실종아동 찾기	43
7. 전자태그 시스템의 도입	47
8. 아동실종 신고번호(182)의 적극적인 홍보	47
VI. 결 론	49
<표 차례>	
표 1	12
표 2	38

<그림 차례>

그림 1	13
그림 2	14
그림 3	27
그림 4	44
그림 5	45
그림 6	46

【참 고 문 헌】	51
------------------	-------	----

I. 서론

2009년 3월 경찰의 ‘유전자(DNA: deoxyribonucleic acid) 분석’을 통한 수사가 15년전인 1995년 5살 난 실종된 아들을 찾았다. 현재 전국의 8세 미만 실종 아동과 실종 지체장애인들은 대부분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2010. 8.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¹⁾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형사정책원과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어린이 실종은 지난 2004년 4,066건에서 2008년 9,47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99% 이상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9살에서 14살 미만 아동 중 미발견된 아동 수는 2009년 상반기에만 36건으로, 2008년 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²⁾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분노 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³⁾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부모는 자식이 실종이 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자식 찾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부모의 죄책감과 우울증 증세는 더욱더 부정적인 감정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며, 대인관계에도 소홀해 지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1) 매일경제, DNA검사 덕에...15년만에 아들 찾아, 2009. 3. 17 일자.

2) YTN, 아동실종사건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 2010. 5. 4 일자.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지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사회는 실종아동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 실종아동 가족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러한 인식하에 1991년 3월 26일 대구에서 개구리를 잡기위해 5명의 초등학생(당시 나이 9-13세)이 실종되었다. 그 후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개구리소년들의 유골 4구와 신발 5켤레가 대구의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되었으나,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당시 경찰은 11년 동안 국내 단일 실종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인력인 약 50만 명의 경찰관을 동원하여 이들의 행방을 찾았으나, 잘못된 제보(1991년 325건, 1992년 97건, 1993년 131건 등이 접수)와 소문만 무성할 뿐 현재까지도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 후 2003년 11월 5일에 발생한 포천 여중생 실종사건은 4개월 후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으로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다.⁴⁾ 그리고 2004년 1월 14일에 발생한 부천초등학생 2명의 실종사건, 이 사건은 실종 16일 만에 인근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사건 발생 2년 5개월 만인 2006년 6월에 범인을 검거하였다.

이러한 실종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실종아동 범죄를 이슈화하면서 국가차원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 및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실종아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5년 5월 정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는 실종아동과 실종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가정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동 법률의 제정 이후에도 2007년 3월 제주에서 발생한 9세 영아 실종 살해사건, 동년 12월에 있었던 안양 초등학생 실종 살해 사건⁵⁾

4) 한국일보, 포천 여중생 3개월째 실종, 2004. 2. 2일자; 동아일보, 포천 여중생 피살 수사-동두천 끌고간 20, 30대 남자 3명 추적, 2004. 2. 9.

등 아동의 실종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실종아동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수사는 어렵지만 범죄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상당수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아동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현재 시행중인 신상공개 및 전자팔찌 제도 등을 더욱 강력하게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⁶⁾

해마다 경찰에 접수되는 실종 사건은 실종아동 사건을 포함하여 무려 5만-6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실종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현 실태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종아동에 대한 현재의 실태 현황과 선진국의 실종아동에 대한 수사제도, 국내의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 대책과 정부 및 관계기관의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 연합뉴스, 양서 초등생 2명 일주일째 실종, 2007. 12. 31; 조선일보, Why 흔적도 단서도 안개 속..., 2008. 1. 27; 연합뉴스, 수원 암매장 여아는 안양 실종 초등생, 2008. 3. 14; 연합뉴스,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유력 용의자 검거, 2008. 3. 16일자 참조.

6) 경찰대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아동 대상 범죄의 동기는 돈이나 성적 목적으로 크게 이분할 수 있는데 이 중 돈을 노린 경우는 초범이 많지만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며 “전과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고, 아동 범죄자들의 경우 재범 가능성과 반사회성 등을 철저히 진단해 정신과적, 범죄심리학적 치료와 감시 및 통제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아동범죄의 경우 평균 형량이 1년 반~2년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또 실형을 받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10%, 기소율이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동 범죄의 경우 강한 처벌과 신상공개, 정신과, 약물 치료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I. 실종아동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실종아동의 개념

2005년 12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실종아동의 개념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에 따라,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에서는 9세 이상 아동은 가출로 보고, 8세 이하의 아동은 실종으로 보았다. 그리고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으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서는 미성년자를 20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등 아동의 연령에 대한 개념이 모호했을 뿐 아니라 처벌법규의 범위도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실종아동은 협의적 개념이 ‘단순 미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넓게 보고 있으며,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실종아동을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하여 더욱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모호하고 중첩적이었던 ‘아동’, ‘실종’, ‘미아’⁷⁾, ‘가출’과 같은 개념들에 대하여 개별법령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실종아동의 효과적 처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⁸⁾

7) 연세한국어사전에 의하면, 미아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잃은 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윤호, 아동 실종사건의 효과적 처리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09, 10, 15-16; 林在植, 兒童失蹤事件의 警察 搜查上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9, 11-12면.

먼저 실종(失蹤)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 실종이라 함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쉽사리 돌아올 가망이 없는 부재자(不在者)가 생사불명의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실종의 범위를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에 실종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 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소재의 발견·확인·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실종아동등·가출인업무처리규칙」을 살펴보면, 실무적으로는 실종자를 ‘실종아동등’ 과 ‘가출인’ 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⁹⁾

아동(兒童)은 어린이·유아·청소년 등의 용어로 혼용되기도 하고, 시대와 사회의 변천과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다. 사전적으로는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2조,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¹⁰⁾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5년 5월 31일에 제정되어,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동법 제2조는 실종아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실종아동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 이전의 미아찾기사업에서는 8세 이하로 아동을 정의하였는

9) 경찰청 예규 제346호.

10) 아동의 개념과 혼동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 의 개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에서는 어린이를 만 10세미만으로 규정하고, 후자에서는 18세 미만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범위를 19세 미만인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관련 법규정이 법제정의 취지에 따라 명칭 및 범위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윤호, 위의 논문, 16면.

데, 동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고,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아동 등을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즉,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등에 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도 아동등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장애인에 대한 종류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종류를 1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중요한 장애인의 종류를 살펴보면, ①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礙人)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② 언어장애인(言語障礙人)은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③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④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礙人)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⑤ 정신장애인(精神障礙人)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장애인(腎臟障礙人), 심장장애인(心臟障礙人), 호

흡기장애인(呼吸器障礙人) 간장애인(肝障礙人), 안면장애인(顔面障礙人),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礙人), 간질장애인(癇疾障礙人) 등이 있다.

2. 실종아동의 유형 분류

현행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¹¹⁾」 제2조에 의하면, 실종아동을 ‘단순실종아동’ 과 ‘범죄실종아동’ 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단순실종아동’ 이라 함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등 중 가출하거나 단순히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실종아동’ 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등 중 약취·유인·유기·사고 등의 범죄가 의심되는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음에는 단순 실종아동이었으나, 사후에 범죄실종 아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범죄실종아동’ 에 포함하고 있다.

범죄와 관련된 실종아동은 범죄피해로 인해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친족에 의하거나 원한관계 또는 정신질환 등에 의한 무동기성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은 범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약취·유인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된 실종아동은 그 목적에 따라서 금품, 성(性), 양육, 노동력 갈취, 협박, 국가지원비 탈취, 무동기(無動機)성 등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¹²⁾

첫째, 금품목적으로 범인은 아동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한 후 아동의 생명·신체를 자신이 지배하에 두면서 부모 등 보호자를 협박하여

11) 2005. 11. 30 제정(행정자치부령 제304호)되어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2) 林在植, 兒童 失蹤事件의 警察 搜查上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9, 20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통 ‘유괴’라는 용어로 지칭된다. 금품요구의 유형은 아동을 약취·유인하여 그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의 우려를 이용하여 아동의 몸값을 요구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금품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을 유괴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는 다른 실종아동 범죄와 비교하여 수사상 접근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¹³⁾

둘째, 성(性)을 목적으로 한 범죄로 강간·추행 등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아동을 약취·유인하는 범죄유형이다. 대부분의 아동 성폭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이 없는 곳으로 아동을 데려가기 때문에 약취·유인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정도에 따라 피해아동의 귀가 또는 발견시간이 단기간인 경우에는 아동 성폭력사건으로 인지되고, 장기간 귀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실종사건으로 귀결된다. 성폭력의 범인은 일반적으로 소아기호증(Pedophile)¹⁴⁾을 가지고 있는 바, 이들은 성인과의 관계에서는 남성적으로 부족하거나 성적으로 부족하다는 열등감 때문에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¹⁵⁾ 이와 같이 성(性)과 관련된 목적의 범죄 대상은 주로 초등학교 정도의 여자 아동이며, 이러한 범죄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증거인멸을 위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를 가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양육을 목적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권한이 없는 자가 아동을 자신의 보호하에 두기 위해 약취·유인하는 유형이다. 이는 정신

13) 林在植, 앞의 논문, 20-22면 참조.

14) 소아기호증(Pedophile)이란 사춘기 이전의 소아(보통 13세 이하)와의 성적 접촉을 더 선호하거나 이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만 성적인 흥분이 일어나는 정신질환으로 ‘소아애호증’ 또는 ‘아동성애자’라고 한다. 특히 여자아이에 대해 성인 남성이 성적으로 집착하는 증상은 ‘로리타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5) Bartol R. and Anne M. Bartol, *Criminal Behavior - A Psychosocial Approach*, 8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2008, pp.438-440.

질환자 또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이혼 등으로 인해 양육권이 없는 부모 등 친족에 의해 범행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들 범죄자들은 보호자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이용해 빈 집에 들어가 아이를 안고 나오거나, 밤에 주거에 침입하여 아이를 안고 나오거나,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의 경우에는 먹을 것을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유괴한다. 그러나 이들은 유괴한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신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유괴범죄에 비하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넷째, 노동력 갈취가 주 목적인 유형으로 아동의 노동력을 갈취 또는 구걸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약취·유인하는 유형이다. 이는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 정상 아동보다는 정신·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과 초등학교 연령 정도의 아이가 주로 피해 대상이 된다.

다섯째, 협박을 목적으로 아동을 유괴하는 범죄 유형으로 이는 대개 안면이 있는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 아동의 부모가 범죄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즉, 범죄자는 피해자 아동의 부모에 대한 불만이나 원한을 제대로 표시할 수 없을 때, 제3의 방법인 자녀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채무관계의 협박용으로, 아동 부모의 소재를 확인 등을 위해 아동을 이용한다. 이러한 유형은 아동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다.¹⁶⁾

여섯째, 국가지원비 탈취 유형으로 아동 보호시설·정신의료기관 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수용하는 기관에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을 은닉·감금함으로써 발견 및 가족 복귀를 지연 또는 곤란케 하는 유형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종아

16) 林在植, 앞의 논문, 22-25면 참조.

동의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수급권자로 책정이 되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미신고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제도권 밖의 시설에서 이런 점을 악용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중간에서 착복하거나 각종 후원을 받기 위해 수용된 아동의 신원확인을 회피하거나, 신원을 위조하여 경찰·자치단체 기관의 수색 및 조사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¹⁷⁾

특히, 이러한 시설들에는 버려진 아동과 정인지체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질환 등을 빙자하여 아동을 감금·폐쇄 격리시키는 등의 인권침해도 수반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종교와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인 시설의 특성으로 인해 경찰 수사기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무동기성의 유형으로 아동의 약취·유인 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뚜렷이 밝히기 어려운 형태의 범죄이다. 이러한 유형의 대상은 주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며, 아동들을 비교적 범죄자의 유혹에 따라 동조적으로 응하고 범죄자들은 아동에게 어떠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⁸⁾

3. 실종아동의 실태 현황

현재 경찰에 접수되는 실종 사건은 무려 5만~6만건에 이른다. 경찰은 접수된 사건 중 14세 미만인 아동과 정인지체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는 ‘실종’으로, 14세 이상 청소년과 성

17) 정익중, 한국의 실종아동,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어린이재단 실종아동 전문기관, 2006, 20면.

18) 林在植, 앞의 논문, 26면 참조.

인은 ‘가출’로 처리하고 있다. 두 경우를 합쳐서 통상 ‘행방불명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행방불명자의 수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6년 5만9739건, 2007년 6만5003건, 2008년에는 상반기에만 3만5439건이 발생했다.¹⁹⁾ 연간 6만건으로만 쳐도 하루 평균 164명이 어떤 이유에서건 사라지고 있다.²⁰⁾

그러면 실종아동의 경우는 어떠한가? 현재 경찰청의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의 신고접수를 전담하고 있다.

2005년 12월 1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되기 이전에는 「미아·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실종아동의 연령이 8세 이하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종아동법이 제정되면서 아동의 연령이 14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다음의 [표 1]에 의하면, 2004년, 2005년도는 8세 이하의 실종아동에 대한 통계이다.

2008년에 발생한 ‘실종아동 등’의 신고건수는 정상아동(14세 미만)이 9,470명으로 2007년 대비 10.1% 증가하고, 치매노인은 4,246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한 반면 정신지체장애인은 4,865명으로 전년 대비 32.8%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유괴·실종경보시스템 매체 확대,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시행 등 치안시스템 내실화로 전체 ‘실종아동 등’의 발견율이 매년 증가·향상되고 있다.²¹⁾

이후 2009년 실종아동등 신고건수는 9,240건으로 2008년과 비교하여

19) 일본의 경우 일본경찰청 생활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실종·가출 건수는 모두 8만8000건이었다. 같은 해 우리의 실종·가출보다 2만2000건 가량 많다. 하지만 일본 인구가 우리보다 2.5배나 많은 1억20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실종·가출 발생 비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우리는 인구 1000명당 1.3명꼴로 실종·가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반해 일본은 1000명당 0.7명인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이 실종·가출 사건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2002년 10만200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5년 연속 감소해 2007년에는 8만8000건까지 떨어졌다.

20) 이동훈, 실종大國, 한국의 실태, 주간조선(통권2042호), 朝鮮日報社 2009, 22-24면 참조.

21) 경찰청, 2009 경찰백서, 경찰청, 2009, 79면.

소폭 감소(-2.4%)하였으나, 정신지체장애인은 5,564건, 치매노인은 5,659건으로 2008년 대비 14.4%, 33.3%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괴·실종 경보시스템 운영, 유전자 검사 및 보호시설 일체수색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2009년 발생한 전체 실종아동등 중 99% 이상을 발견하였다.

[표 1]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현황²²⁾

(단위 : 명)

구 분	8세 이하 아동		9-14세 아동		정신지체장애인		치매노인	
	발생	미발견	발생	미발견	발생	미발견	발생	미발견
2004	4,064	1	-	-	5,196	61	-	-
2005	2,695	0	-	-	6,182	126	2,886	52
2006	2,290	1	4,774	4	6,872	18	3,534	13
2007	2,206	1	6,396	1	7,239	18	4,118	16
2008	1,710	1	7,760	32	4,865	92	4,246	35
2009	2,062	3	7,178	30	5,564	147	5,659	42

※ 출처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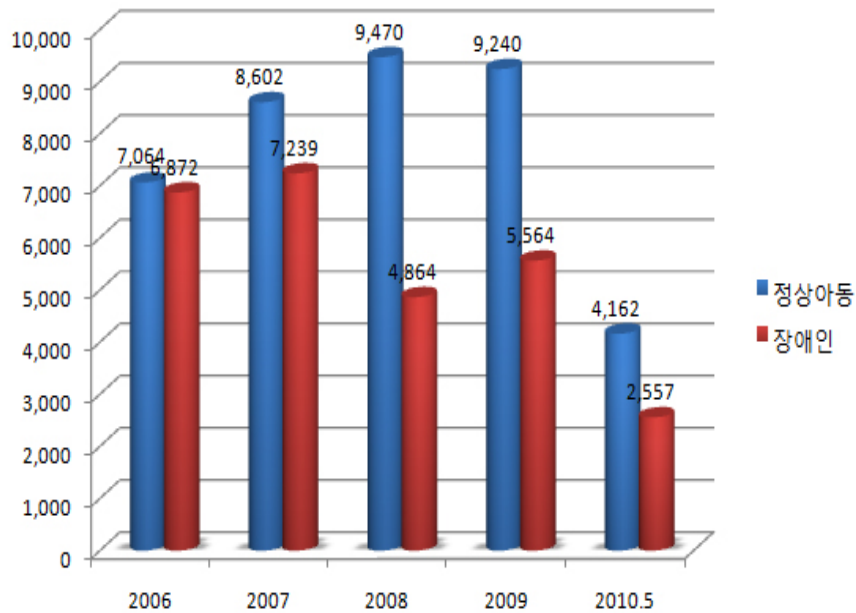
2010년 5월 현재 실종아동은 4,162명으로 이중에서 4,104명은 부모에게 인도되었으나, 58명은 실종된 상태이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는 2,557

22) 경찰청, 2009 경찰백서, 2009, 79면; 경찰청, 2007 경찰백서, 105면.

명이 실종되어, 2,407명이 인도되었으나, 150명은 실종된 상태였다.²³⁾

[그림 1]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통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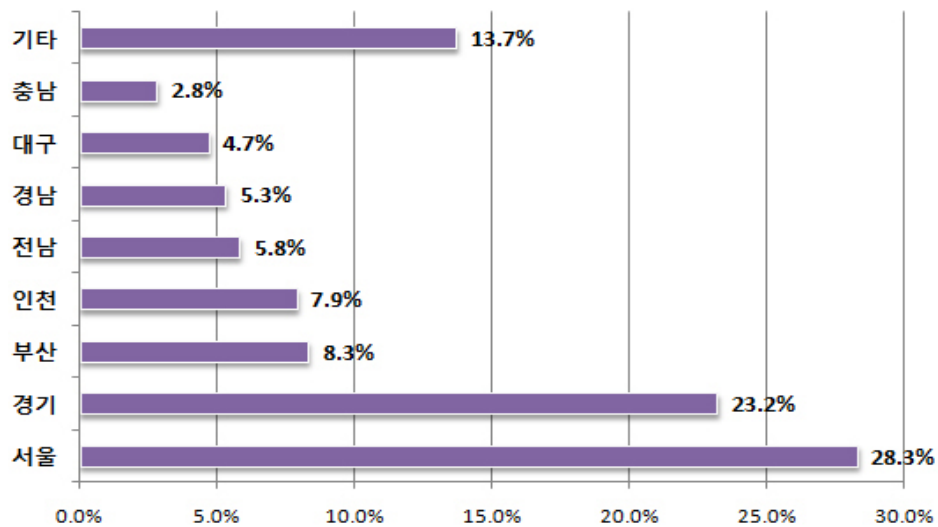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공식 통계(2010. 5)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도 지방청별로 실종아동 발생 현황은 다음 [그림 2]와 같은데, 서울이 전체 중 28.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사고 발생건수도 그만큼 상

23) www.missingchild.or.kr/mcdoc/mc_statistics.aspx (2010. 10. 21 방문).

대적으로 높다. 2위인 경기지역은 23.2%, 부산은 8.3%, 인천은 7.9%, 전남 5.8%, 경남 5.3% 순이었다.

[그림 2] 2007년 지방청별 실종아동 발생 현황



※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2009. 12)

4. 경찰의 실종아동 수사

가. 앰버경보 시스템(Amber Alert System)

앰버경보시스템(Amber Alert System)이라 함은 어린이 유괴·납치사

건에 대한 미국 내의 비상 경보체제를 말한다. 앰버경보(Amber Alert)는 1996년 미국 텍사스에서 납치·살해된 당시 9세짜리 소녀 앰버 해거먼(Amber Hagerman)의 이름을 딴 비상 경보 체제로 ‘미국의 실종사건: 방송의 비상 대응(America’s Missing: Broadcast Emergency Response)’의 약자(略字)이기도 하다.

경찰이 경보를 발령하면 해당 지역의 TV, 라디오 등 모든 전파매체는 폭풍경보와 마찬가지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납치사실을 즉각적으로 실시간 보도하며, 또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통해 납치된 어린이의 인상 착의, 수배 차량과 차종·차량번호·색깔 등을 계속 내보낸다. 앰버경보는 상업 라디오 방송이나 위성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Child Abduction Emergency’라는 긴급경고 문구로 알리게 되고, 이메일이나 전자교통상황 안내판, 무선 SMS 메시지 등도 이용하게 된다.

앰버경보 발령은 경찰의 실종 조사기관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유괴된 아이의 이름과 특징, 납치범의 특징, 납치범 차량의 번호 등을 알리게 된다. 2002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州)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13건의 납치 및 실종사건이 해결되는 등 총 30명의 납치된 어린이가 생명을 건졌고,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²⁴⁾

우리나라는 2007년 실종아동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앰버경보 시스템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였는데, 이 앰버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7

24) 프랑스는 2006년 3월부터 미국의 유괴정보시스템을 도입, 법무부에서 운영 하고 있다. 경찰은 언론매체에 경보내용 전파, 비상설 유괴정보 신고, 접수팀 운영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괴경보 발령은 18세 미만 청소년자야 하고, 경찰기관에 의해 실종사유가 유괴임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하며, 피해자 생명이 위독해야 하고, 범죄자 및 피해자의 위치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개수사를 위한 부모의 동의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보발령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다. 다만, 공개수사를 위한 부모의 동의는 없어도 검사가 재량으로 발령이 가능하다. 林在植, 앞의 논문, 46면 참조.

년 4월 9일 경찰청 주관 하에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유괴실종아동 발생시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및 서울시 고속화도로, 지하철의 전광판 등 총 4천 2백개소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라디오를 통해 아동의 유괴 및 실종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앰버경고시스템을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였고, 제1호 경보 대상으로 제주에서 실종되었던 양○○ 어린이를 발령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시스템상으로는 유괴 및 실종아동의 사진 송출이 곤란하고, 경보매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광범위한 전파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국회와 실종자 가족 및 NGO 등에서 유괴 및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 및 발견을 제고를 위해 시스템을 실종아동 찾기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실종유괴 아동의 사진 및 세부 정보 등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는 공영방송인 KBS와 KTV 방송과 다이용시설인 국민, 기업, 농협, 우리, 신한은행과 도로, 로터리, 대형전광판 및 영업장내 PDP 5천43개소와 SK텔레콤에 이어 KTF, LG텔레콤, 휴대전화, 모바일 송출로 언제 어디서든 정보 수신이 가능토록 하는 등 아동의 사진 및 상세정보까지 전파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당 8개 기관과 협약 체결 및 KTV와 업무 협조 하였다.²⁵⁾

현재 경찰청에서는 실종유괴아동 앰버경보시스템의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그 효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기실종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앰버경보시스템의 발령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최신 컴퓨터 몽타주 기법을 이용하여 연령 변환 얼굴을 활용하는 실종유괴아동의 앰버경보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25) 경찰청 내부 자료 참조.

나. 실종아동 프로파일링(Profiling)

프로파일링(profiling)이라 함은 연쇄살인범을 포함한 가학적 이상 성 범죄자, 연쇄방화범 등의 행동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미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Investigation)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Criminal profiling, Offender Profiling, Psychological profiling 등으로 지칭되고 있으며, 범죄자에 국한하지 않고, 지리적, 언어적 분석과 여러 사건의 동일범 여부를 판단하는 연관성 분석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²⁶⁾ 이러한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신원(Identity)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type)을 파악하는 것이며, 범죄현장에 보통의 경우와는 다른 특별한 흔적을 남겼을 때 이를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다.²⁷⁾

실종아동 프로파일링(profiling) 이라 함은 “실종자 관련 자료를 발생시간, 장소 및 신체 영구 특징, 병력 등을 정밀 분석, 추적해서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수사기법이다. 즉, 경찰에 신고, 접수되는 자료 및 신체 특징 등을 분석하여 이를 추적해서 실종자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종자들에 대한 정보를 발생시간, 장소, 신체 특징 등과 같이 변인(variable)을 설정하고 데이터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08년 3월부터 실종자에 대한 신고, 접수 전산망을 개선하여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실종아동 신고 접수시 작성하는 양식을 기존 간단한 신체특징만을 입력하는 31개 항목에서 외모·착의 및 고유한 신체 영구특징까지 포함하는 7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유형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료

26) 高村 茂·桐生正幸 共著, 프로파일링とは何か(東京: 日本科學警察研究所, 2000, 15面).

27) 김용화, 한국의 살인범 Profiling 모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8면.

간 검색 및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아직 실종자 관련 전국 통합전산망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자료와 경찰의 자료가 서로 간에 조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시설 입소 무연고자의 자료와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연계, 시설에 수용된 무연고자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전산상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 얼굴변환(Age-progression) 프로그램

얼굴변환 프로그램이라 함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얼굴사진을 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를 먹고 성장하고 늙어가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추정해서 그려내는 과학수사 프로그램을 말한다.

미국에서 얼굴변환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1980년도부터인데, 실종 당시 연령이 2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실무상 실종된지 2년 후부터 실시하고, 18세 미만에는 대해서는 2년마다, 18세 이상에는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미국의 얼굴변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장기 실종 아동의 현재 모습을 재구성하여 실종아동을 찾고 있으며, 부모가 동의한 장기 실종 아동의 수배 전단을 전국 경찰관서와 유관 단체에 배포하고 있다.

경찰은 2009년 11월 장기 실종 아동 가운데 시범적으로 7명을 선정한 뒤 2008년 5월부터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작업해 실종 아동의 현재 얼굴을 추정하는데 성공하였다. 추정 얼굴은 실종 아동의 외형적 특징을 반영하고 실종 아동과 많이 닮은 부모, 형제·자매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비교해 만들어졌다.²⁸⁾

그러나 현재의 얼굴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실종 아동 부모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얼굴변환 프로그램 도입이 실종 아동 찾기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얼굴변환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며, 연령대 별로 경찰 수사에 참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라. 실종아동의 전담 수사 부서

미국 연방수사국은 실종된 아동을 수사하기 위해 아동대상범죄 수사전담반(Crimes Against Children Unit; CAC)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²⁹⁾ 이는 실종아동 범죄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아동대상범죄 수사전담반(CAC)에 아동납치신속대응팀(Child Abduction Rapid Deployment; CARD Team)을 설치하여 수사를 하는데, 아동대상범죄는 발생 직후 몇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아동실종, 납치, 유괴, 성폭행 등 아동대상 범죄 발생 즉시 수사관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다.³⁰⁾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2008년 4월부터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을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하였는데, 일선경찰서의 경우에 실종사건 외에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

28) 국민일보, 얼굴변환프로그램 도입 재구성, 2009. 11. 2 일자.

29) 아동대상범죄 수사전담반(Crimes Against Children Unit; CAC)의 주된 임무는 ①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당할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②전국에서 발생하는 아동대상 범죄에 대해 즉각적, 효과적, 전문적인 수사를 실시하며 ③전국 각급 경찰관서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기법을 지원하며 합동수사를 실시한다. ④피해자 및 목격자를 보호 지원하고 ⑤관련 기관 간 정보,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한다.

30) 표창원, 어린이 대상 범죄(실종, 유괴 및 성폭행) 치안대책, 2008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8, 25-28면 참조.

종사건 전문팀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프로파일러는 몇 명 되지 않고 수사경력이 많지 않은 수사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수사효율성도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FBI처럼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전문적인 수사관들을 모아 실종사건 전담수사 부서를 설치·운영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Ⅲ. 외국의 실종아동 관련 수사 제도

1. 미국

가. 미국의 아동실종 보호법체계

1981년 당시 6세였던 아담 월시(Adam Walsh)는 1981년 플로리다의 한 백화점에서 어머니와의 쇼핑 도중 사라졌고, 실종 16일 후 아담의 시신이 집에서 12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1994년 7월 미국의 뉴저지에서 7살 소년 메건 니콜 칸카(Megan Nicole Kanka)가 실종되었는데, 이웃 아저씨에 의해 납치 후 살해되었다. 2008년 미국 버먼트에서 당시 12살인 브룩 베넷(Brook Bennett)이 집근처에서 실종되었고, 그 소녀는 성폭행 당한 뒤 암매장을 통하여 살해 되었다.³¹⁾

이러한 실종 범죄로 인하여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실종아동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와 실종아동 찾기에 경찰과 민간단체가 적극적이고도 긴밀한 협조로 실

31) EBS, 아동범죄, 미스터리의 과학 3부(우리아이 어떻게 지킬것인가?), 2009. 7. 29 방영.

효성 있게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종아동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터넷 사이트를 마련하여 경찰 및 다른 단체와 긴밀한 정보교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전자(DNA)분석이나 얼굴변환(Age-progression) 프로그램 등 최신기술도 활용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Virginia) 주(州)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기관인 「국가 실종 및 착취 아동센터: 미국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종 어린이 찾기에 전념하는 민관기관」(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의 보고에 의하면,³²⁾ 미국은 가족에 의하지 않은 단기유괴가 매년 3,200건에서 4,600건의 보고되고 있으며, 200건에서 300건은 전형적인 유괴로 보여진다. 모든 연령대의 아동이 피해자가 되고 있으나, 특히 11세에서 14세의 여자 어린이와 6세에서 9세 사이의 남자 어린이가 높은 빈도를 보인다. 70%이상의 유괴 사례는 성폭행과 관계되며 대다수의 피해아동이 길거리에서 유괴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매년 114,600건의 유괴가 시도되고 있으며, 아동의 가족과 관계없는 범죄자에 의해서 행해진다. 가족에 의한 유괴도 매년 354,100건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중 반 정도는

32) 미국의 방송인 존 월쉬(John Walsh)가 설립하였으며, 이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1981년 당시 6세였던 그의 아들 아담(Adam)은 1981년 플로리다의 한 백화점에서 어머니와의 쇼핑 도중 사라졌고, 실종 16일 후 아담의 시신이 집에서 12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무참하게 훼손된 시신의 머리부분만 발견됐을 뿐, 남은 시신은 영원히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인 월쉬(John Walsh)는 좌절하지 않았다. "다시는 내 아들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며 아동유괴 방지 운동에 나섰다. 그리고 월쉬부부는 국가 실종 및 착취 아동지원센터(NCMEC)를 설립하였다. 그들의 노력으로 미국 의회는 실종아동지원법(Missing Children Act of 1982, Missing Children's Assistance Act of 1984)을 제정했다. 공공장소에 미아가 발생하면 아예 매장 셔터를 내려버리고 어린이를 찾아 나서는 '코드 아담(Code Adam)' 제도는 월쉬가 노력한 결과다. 2006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성범죄자 신상명세 및 주소지를 공개하는 '아담 월쉬 아동보호 특별법'에 서명했다. 그 후 27년이 지난 2008년 12월 16일, 플로리다 경찰은 "연쇄살인범 오티스 톨(Ottis Toole)이 아담 월쉬의 살해범"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톨은 1983년 플로리다에서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연쇄살인범이었다. 그는 83년 체포 당시 수사과정에서 아담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곧 그 말을 번복했다. 경찰 역시 그의 증언을 믿지 않았고 기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으나, 1996년 간암으로 자연사했다. 경향신문, 26년만에 아들 살해범 밝힌 지명수배소 MC, 2008. 12. 25일자.

양육권을 받지 못한 아버지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³³⁾

미국의 실종사건 관련 법체계는 관련법 체계 및 제도의 우수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표준으로 삼고 있는데, 1932년의 연방납치법(Federal Kidnapping Act)³⁴⁾을 제정하여 연방 법무부가 미국의 각 주에서 발생한 납치사건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후 1982년의 미아법(Missing Children Act)³⁵⁾, 1984년 실종아동지원법(Missing Children's Act)³⁶⁾이 제정되었으며, 1994년 전국아동찾기지원법(National Child Search Assistance Act)의 제정으로 FBI가 운영하는 국립범죄정보센터 NCIC(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에서 실종아동 발견에 도움이 되는 수배사항들을 신설하였다.³⁷⁾

33) 가출의 경우는 매년 446,700건으로 추산되고 있는바, 이들 중 133,500명의 아동은 가출 기간 동안에 안정된 보호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1/3의 아동이 같은 해 동안에 1번 이상 가출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은 청소년기의 아동들이다. 또한 매년 127,100명의 아동들이 보호자로부터 쫓겨나가거나 가출 후 찾지 않거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 당하고 있으며, 59,200명의 아동이 안정된 보호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 아동은 청소년기의 아동들이지만, 유기의 경우에는 4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매년 438,200명의 아동이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행방을 모르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 경우가 바로 아동의 행방을 알게 될 때까지 이것이 단순한 미아사건인지, 유괴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행방을 알게 될 때까지는 미아(missing children)로 분류되는데, 이들 중 139,100 사례가 경찰이 개입되기에 충분히 위험하고 심각한 사례였다. 이들 438,200건의 사례중에서 반 정도가 4세 미만에 해당되며, 24시간 이내에 해결되었고, 1/5 정도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으며, 14%가 부모로부터 이탈된 동안에 학대나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NCMEC 통계보고; 林在植, 앞의 논문, 85-86면 참조.

34) 이 법률은 대서양 무착륙 단독비행으로 유명한 미국의 비행기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Lindbergh, Charles Augustus)의 아들이 실종된 지 2개월 만에 처참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미국 의회에서 제정하였다.

35) 1980년대 초 미국의 애틀랜타 주에서는 29명의 청소년이 살해되고, 뉴욕-플로리다에서도 아동 납치살해사건이 발생하자 1982년 범집행기관들이 모든 실종아동사건을 치밀하게 수사하고 관련 정보를 FBI 국가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36) 1984년에 실종아동지원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률은 연방정부가 실종아동 찾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의 근거로 미국 법무부 산하에 비영리법인인 MCMEC를 설립, 24시간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이용하여 실종 아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들이 실종 아동을 찾는 것을 도우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37) 林在植, 앞의 논문, 87면 참조.

나. 실종아동 사건의 수사체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실종아동 범죄에 대하여 경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실종아동 사건이 발생하면 연방경찰과 국가 앰버경보시스템의 국가적 시스템과 지역 경찰 및 주(州) 경찰이 국가실종 및 착취아동센터(NCMEC)와 협력 및 연계하여 수사하고 있다.³⁸⁾

미국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는 경찰이 하고 있으며, 각 주별로 실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관은 실종사건을 급박한 것과 급박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며, 전자의 경우는 18세 미만의 아동, 60세 이상의 고령자,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로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지휘본부(Command Post)를 설치하고, 수배전단제작, 수색 등 실종아동을 찾는 수사를 진행한다. 후자의 경우는 실종자가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자로 사안에 따라 가출 또는 실종관련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이 실종되었을 경우에는 ‘잠재적인 유괴범죄’로 간주하여 경찰과 FBI가 즉시 수사에 가담하며 지역경찰은 국가 앰버경보 담당관에게 앰버경보를 요청하고, 담당관은 NCMEC에 앰버경보를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

또한 미국은 실종사건 수사 등 경찰활동 또한 각 주마다 별개로 운영하고 있지만, 아동실종사건의 경우는 NCMEC가 설립되면서 실종아동 찾기에 대한 전국 단일망 체계가 구축되었다.³⁹⁾

38) 이는 법의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아동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부모가 지역경찰에 신고하거나 통합아동실종 신고전화로 신고를 한다. 그러면 지역경찰은 즉시 국가범죄정보센터에 이를 등록하고 앰버경보 발령여부 및 FBI 수사지원 요청여부를 결정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앰버경보 조정관’을 통해 전국적인 앰버 경보 통신망을 운영, 조율, 발전시키며 FBI의 전문수사관을 현장에 투입, 중요 아동실종사건을 수사한다. 그리고 NCMEC에서는 실종아동 부모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 범죄와 무관한 실종이나 장기 실종사건에 대해 전문수사관과 장비를 투입하여 지속적인 수사와 수색을 실시한다. 林在植, 앞의 논문, 87-88면 참조.

다. 국가 실종 및 착취 아동센터(NCMEC)

미국 버지니아(Virginia) 주(州)에는 비영리 민간단체기관인 「국가 실종 및 착취 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는 1984년도 실종아동지원법(Missing Children's Assistance Act)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실종아동 관련 국립정보센터로서 전권을 위임받아 법무부, FBI, 재무부, 국방부 등의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실종아동 찾기 및 예방에 관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⁴⁰⁾

NCMEC의 주된 업무는 실종 또는 성(性)학대 아동에 대한 정보센터의 역할과 국제적 유괴아동 사례를 수집·분석하며, 전 세계 실종아동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홍보하여 국제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또한 실종아동 사건을 수사하고, 법률적으로 기소 및 실종아동의 치료에 대한 지원을 한다. 그 밖에 실종예방프로그램 실시, 법집행기구 및 민간단체에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실종아동 관련 입법정보 제공,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⁴¹⁾ 그리고 미국의 모든 주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 신고가 취합될 수 있도록 24시간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미국 전역의 경찰 순찰차 및 담당 경찰관에게 실시간으로 실종아동 자료가 전송되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NCMEC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앰버경보(Amber Alert)시스템 운영⁴²⁾, 실종아동 사진홍보 캠페인(Picture Them Home)⁴³⁾, 얼굴변환프로

39) 경찰청, 미국·캐나다의 미아 찾기 시스템 보고서, 경찰청, 2004; 林在植, 앞의 논문, 88-90면 참조.

40) 김상균, 실종사건처리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범죄심리학회 정기학술세미나, 2006, 36면.

41) 이윤호, 앞의 논문, 24-25면.

42) 미국 정부기관은 실종아동들의 정보를 사회와 경찰들에게 알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고안하였는데, 1996년 텍사스(Texas) 주(州) 엘링턴(Ellington)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유괴되어 잔인하게 희생된 앰버 하거먼(Amer Hagerman)이라는 9세 소녀의 이름을 딴 앰버 경보(Amber Alert)

그램(Age-progression Program)⁴⁴⁾, Project Alet⁴⁵⁾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부모간 지원 프로그램(parent to parent)⁴⁶⁾, 경제지원프로그램, 팀호프(Team HOPE: Help Offering Parents Empowerment)⁴⁷⁾ 그리고 실종아동 예방 프로그램으로 예방교육 및 관계자 교육, 코드 아담(Code Adam)⁴⁸⁾ 등이 있다.

2. 캐나다

가. 캐나다의 아동실종 보호 체계

캐나다는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

시스템이다. 그 소녀의 이름인 Amber은 'America's Missing Broadcast Emergency Response'의 약자로 명명하였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45개주에서 엠보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관하고 NCMEC에서 운영하고 있다. 방송의 예를 들면 "이 방송은 엘링턴 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엠버 경보입니다. 2개월 된 여자아이가 유괴되었습니다" 라는 엠버경보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특별 경보방송을 한다. 현재 인터넷, 라디오, TV, 교통부, 도로 표지판, 복권기계들을 이용해서 트럭운전자와 트럭운송회사에 경보를 보내고 있다. www.voanews.com/english.(2010. 10. 29 검색)

- 43)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광고 우편물(direct mail)을 통한 실종아동 사진을 우편엽소로 발송하는 홍보 프로그램이다.
- 44) Age-progression Program 은 이 기관에서 장기 실종아동 수사를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실종된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후의 모습을 추정하는 얼굴변환 프로그램으로 실종 당시의 연령이 2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포토샵(photoshop)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이 장치는 연령, 성별, 유전적 요인 등 얼굴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부모 사진 등을 종합해 시간 경과추이에 따라 변한 실종아동들의 모습을 추정한다.
- 45) 이는 미연방 및 주 경찰업무 집행기관에서 은퇴한 경찰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현역 경찰관에게 수사방향 등의 조언과 지지를 해주고 있다.
- 46) 실종아동을 연결하여 두 가족이 동의할 경우 협력관계를 맺고 실종아동 찾기에 같이 고민하고 협조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발생장소와 시간이 유사한 경우 부모들이 협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 47) 실종아동 가족 및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부모, 가족들로 구성된 자조모임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 48) 미국 최대의 아동보호 프로그램으로 월마트에서 처음 시행하였는데, 실종아동 발생시 고객이 직원에게 말하면 즉각 코드 아담 경보가 발령되고 모든 직원들을 일을 멈추고 아동이 쇼핑물을 떠나지 않도록 수색하며 10분이 지나도 찾지 못할 경우 즉각 경찰에 연락하는 시스템이다.

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기 실종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유전자 분석이나 얼굴전환 예측기술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신기술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온타리오주에서는 1만 3,000여명의 아동 지문을 프린트해 보관해둔 뒤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신원 파악에 활용한다. 신생아들의 사진과 발바닥 프린트를 확보해 실종아동 보호기관에 등록한 뒤 사건 발생시 이용하는 ‘ID 프로그램’도 실종아동 수색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⁴⁹⁾

캐나다의 실종아동 보호체계는 캐나다 경찰 산하의 전국 실종아동 서비스(National Missing Children Service; NMCS)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와 미아 및 실종아동 민간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갖고 결합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1986년 8월 설립된 캐나다 연방경찰(RCM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은 그 산하에 미아 문제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소(MCR: Missing Children Registry)를 두고 있고, MCR은 2001년 NMCS로 전환되었다. NMCS는 캐나다 국내 경찰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와의 연계를 통하여 미아 발생시 신속한 연락망체제로 유괴자, 실종자, 미아의 소재파악에 대처하고 있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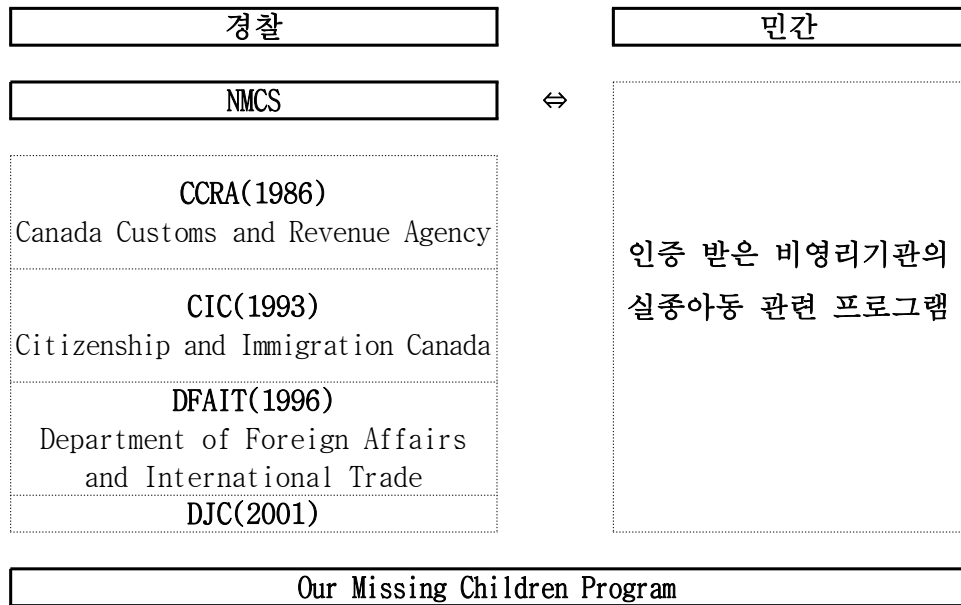
그 이후 캐나다는 재무부(Revenue Canada Customs),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 Canada) 등의 캐나다 정부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여, 미아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4월 RCMP를 중심으로 정부의 실종아동 찾기 기능이 통합되어 공식적으로 실종아동 프로그램(Our Missing Program)을 운영하

49) 서울신문, 아동실종 수사정보 24시간 속보로 전달해야, 2009. 10. 19일자.

50) NMCS에서는 나이변화에 따른 사진 예측 서비스(Photo-age Progression Service), 가족이 직접 미아를 찾아다닐 경우 예비 지원, 각종 조사과정에서 여러 기관과의 협력, 미아를 찾은 이후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MCS의 조사국에서는 미아에 관한 연구와 보고서, 소식지 등을 발간하고 또한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전역의 대중매체에 캐나다 미아의 정보를 알리고 있다. 이윤호, 앞의 논문, 28-29면 참조; 林在植, 앞의 논문, 95-96면 참조.

고 있다.⁵¹⁾ 또한 캐나다의 왕립 기마단 산하에 실종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놓고 있어 즉각적이고도 효율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런 전담수사반에는 경찰뿐 아니라 정신분석학이나 아동학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기법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어 수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림 3] 캐나다 실종아동 관련 체계



51) 여기서 하는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실종아동이 국외로 이동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된 아동을 찾기 위해 캐나다 국경 부근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미아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미아발생시 국외로 이동될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② 이민국에서도 미아가 국외로 이동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캐나다 국적을 갖지 않은 미아에 대해서도 캐나다 아동과 동일한 비중으로 미아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 ③외교통상부에서는 유괴되거나 유괴 위협에 처해있는 아동과 국외로 이동된 아동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④사법부는 미아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실종아동 프로그램은 4개의 정부부처가 긴밀한 상호협조속에서 실종아동 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윤호, 앞의 논문, 29면.

나. 실종아동 사건의 수사체계

캐나다의 연방 경찰인 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를 중심으로 실종아동 수사 시스템을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도 각 주마다 경찰이 있지만, 여러 주를 넘나드는 범죄, 즉, 실종아동을 포함한 아동범죄, 테러방지/방첩, 마약범죄 등의 강력범죄들을 다루고 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Ontario) 주에 1986년 8월에 연방경찰 내에 실종아동 관련 정보를 종합하는 실종아동소(MCR: Missing Children's Registry) 를 설립하고, 2001년 NMCS(National Missing Children Services)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모든 캐나다 경찰, 캐나다 경찰 정보센터와 연계된 관련기관, 미국 경찰 및 인터폴을 통한 40여개국 경찰청과 연계하여 수사하고 있다. 이곳의 주요업무는 실종아동 정보수집 · 분석 · 통계와 일선 경찰기관에 신속히 실종아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종아동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단지 제작 · 배포, 실종아동 민간단체와의 정보 교환, 경찰관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종된 아동이 국외로 이동하는 것을 수사하기 위해 국제형사기구인 인터폴(Interpol)를 비롯하여 40여 개국의 경찰청과도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최근 5년간 20건의 엠버경보 시스템을 발령하였고, 80% 이상이 성공하였다. 특히, 엠버경보는 유괴, 아동이 심각한 중상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 될 경우, 범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에 발령을 할 수 있다.

다. CFC (Child Find Canada)

CFC는 1983년 당시 6세인 Tania Murrell의 실종사건을 계기로 1984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관으로 캐나다에 있는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실종아동 단체이다. 주로 실종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종아동 찾기 및 복귀과정, 실종아동가족 지원, 실종 관련 예방 및 안전교육, 실종아동 관련 캠페인 진행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실종아동 프로그램과, 실종예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1986년 실종아동 찾기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단단체로 MCSC(the Missing Children's Society of Canada)가 있다.

3. 벨기에

벨기에는 전 유럽에 걸쳐 단일 연결망을 통해 국제적인 아동복지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실종된 아동을 찾고 이들의 성적 착취를 예방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연결망은 ‘실종 및 성적 착취 아동을 위한 유럽 센터(The European Centre for Missing and Sexually Exploited Children)’로 범죄, 법률, 사회사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가족들을 맡아 도움을 준다.

이 센터는 11명으로 구성된 응급전화(Hotline)를 운영하고 있는데, 24시간 체제이고 무료 발신전화이며,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정의 훈련을 받아 실종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아동의 성적 착취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데, 아동을 악용한 매매춘과 성폭력 및 성학대에 대한 개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출을 25세 미만의 자가 보호처에서 벗어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출 연령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가출 요인과 관련되거나 30일 이상 실종되었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은 경우를 특별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⁵²⁾

IV. 경찰의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

1. 실종아동 수사시 관련 법·제도의 미비

현행법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을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가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의 나이를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개념과 일반적으로 혼동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의 개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를 만 10세 미만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의 범위를 「아동보호법」상의 아동과 동일하게 18세 미만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범위를 19세 미만인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 규정이 법제정의 취지에 따라 명칭 및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⁵²⁾ 따라서 이에 대한 아동의 연령, 명칭, 범위 등 제도적인 통일성이 없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히 통일성을 갖추어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 실종사건의 발생시 아동이 납치, 유괴되었다면 아동은 살해 될 위험성이 크므로 용의자에 대한 통신감청을 하고, 실종자의 위치

52) 박은미, 효과적인 미아찾기 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개서 15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2002, 13면.

53) 이윤호, 앞의 논문, 57면.

도 신속히 파악해야 하는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아동의 납치, 유괴의 명확한 징후를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력한 용의자도 통신감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실종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경찰이 통신회사에 휴대폰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수사에 지장을 받는다.⁵⁴⁾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7항의 “긴급구조기관에는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고 하여 해양경찰 이외의 경찰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실무상으로는 신고자로 하여금 소방관서에 재신고하여 소방관서에서 통신회사에 위치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⁵⁵⁾ 이러한 부분은 수사의 효율성과 실종 아동의 조속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경찰 수사 인력의 부족

경찰은 실종 처리 사건 중 극히 일부분만 범죄 혐의로 수사하지만, 이

5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5) 임재식, 앞의 논문, 163-164면 참조.

마저도 경찰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현재 실종과 가출 등을 담당하는 경찰력은 전국적으로 258개팀 1,068여명 수준이다. 따라서 한 해 접수되는 실종·가출 사건이 매년 6만여건에 이르는 현실에서 1,000여명 남짓한 경찰의 수사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현 실태이다. 경찰 1인당 매년 60건에 가까운 실종·가출 사건을 처리하면서 범죄로 의심되는 것까지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아동을 비롯한 장애인, 노인 등이 실종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은 그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경찰기관은 실종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경찰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종사건 전담수사팀의 직제화, 일반형사와 여청기능의 통합 등은 실종사건 수사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실종 아동 관련 범죄 자료와 연구의 부족

실종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접수한 사건이 가출, 사고, 약취, 유인, 유기, 유괴 등의 구별이 무엇보다 범죄 사건 해결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러한 실종 범죄 유형의 구별은 실종아동 사건 해결을 위해 신속한 초동 수색을 할 수 있고, 더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종범죄 사건의 유형 구별을 위한 범죄자 정보, 데이터, 피해자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실종 사건의 수사방향을 제대

로 잡지 못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하여 실종 사건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경향이 많다. 또한 수사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종 사건의 수사는 장기화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실종 범죄 사건의 정보와 데이터를 유형별로 분석, 연구를 심층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전산으로 시스템화 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실종아동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들이 축적한 범죄자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경찰관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와 범죄 자료 시스템 축적, 교육강화 등을 통해 실종 관련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실종으로 인한 살인, 성폭행, 상해 등의 제2차 범죄를 예방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진 외국의 실종아동 범죄사건의 정보와 자료들도 분석, 연구하여 신종 실종 아동 범죄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실종 범죄사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 유괴 및 납치 범죄자와 관련된 정신적, 심리적인 범인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와 대책이 현재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분야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배치와 충분한 예산배정을 통해 실종 사건관련 범죄에 대처해야 한다.

4. 실종사건 수사에 필요한 협조의 미비

최근 미국에서 8살 소녀가 집 앞에서 유괴범에 납치됐다가 수사기관의 긴밀한 대처와 용감한 이웃의 도움으로 11시간 만에 구출되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0월 4일 저녁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도시 프레즈노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놀던 소녀 2명에게 범죄자가 “선물을 사 주겠다” 며 접근했다. 모르는 남자가 소녀들에게 접근하는 이 광경을

본 이웃 주민들은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달려갔으나 범죄자는 이미 한 소녀를 강제로 납치해 트럭에 태웠고, 이웃 주민은 이 트럭을 뒤쫓았지만 놓치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바로 앰버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납치된 소녀와 범인의 인상착의가 캘리포니아 전역의 고속도로 전광판과 TV방송을 통해 곧바로 알려졌고, 경찰관 130여명이 즉각 사건에 투입되고 경찰 헬기들이 도시 상공을 돌며 용의차량 수색에 나섰다. 납치된 소녀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건설노동자 빅터 페레스도 납치소식을 접했고, TV에서는 밤새 방범카메라에 한 납치범의 픽업트럭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 장면을 본 페레스는 집 거실 창문 밖을 무심코 보다가 순간적으로 비슷한 트럭을 목격하여 자신의 트럭으로 가로막았고, 그 때 차 안에 있는 소녀의 머리를 범인이 누르는 것을 보았다. 범인은 황급히 소녀를 차 밖으로 밀어내고 달아났다가 체포됐다.⁵⁶⁾

위의 최근 미국의 실종 어린이 사건에서 보듯이 수사기관과 방송기관, 이웃 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실종자를 구하고, 범죄자를 체포한 사례는 실종범죄 사건에 있어 여러 기관의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실종 등을 비롯한 실종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각 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실종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나 위치확인 등을 하기 위해서 통신회사에 통화내역과 위치확인을 요청할 경우에 비록 법원의 허가가 있다고 하여도 휴일인 경우에는 통신회사에 비번 근무자를 호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하고 근무자가 도착하기까지는 경찰의 수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몇 번의 실종사건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경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타 기관과 원활하게 공조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경찰과 실종자 가족과의 협조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6) 연합뉴스, 어린이 납치 대처 이 정도는 돼야..., 2010. 10. 7 일자.

따라서 실종자 가족,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통신회사, 수사기관 간의 협조체제가 완벽하게 법적·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는다면 실종사건은 장기화되거나 미제로 남을 우려가 있다.

5. DNA 확보의 어려움

실종아동 부모 뿐만 아니라 실종자를 둔 가족들은 대부분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하여 DNA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실종아동의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보호시설에 두고도 확인하지 못하는 장기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이러한 DNA검사는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전자 검사에 의하면, 제1항에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과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항은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⁷⁾

물론 경찰청장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미성년자·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유전정보의 목적 외에 사용과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57) 2010. 4월 경남 밀양에서는 경찰이 유전자 채취 및 대조로 14년전 잃어버린 당시 5세인 뇌성마비 장애인을 보호시설에서 발견하여 가족으로 인계하였다. 경찰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하여, 실종아동의 모친 유전자를 채취하여 분석,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었다. 경찰청 내부자료.

이처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DNA 자료를 DB로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현재 DNA 샘플은 경찰이 채취하고, 분석과 보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고, 인전관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미성년자·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의 경우 보호시설의 업주가 DNA의 검사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DNA 샘플의 채취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이 현행 법률의 문제점이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인 보호시설 업주의 서면 동의를 모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시설의 업주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자기 자신도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동의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동 법률 개정을 통하여 조속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실종 사건 전문가의 부족

현재 국내에는 실종사건 관련 전문가도 없고 시스템도 없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이다. 살인과 유괴, 성폭행 등 범죄의 대부분은 ‘실종’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정책과 관계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로 가족들의 고통은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

현재 실종아동 사건 관련 경찰에 대한 전문교육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 실종아동 담당 경찰관은 일반적인 수사전문성도 갖추어야 하지만, 아동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의 성향과 특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아동의 납치범이나 유괴범의 범죄심리 연구나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아동들의 심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

하다. 대부분의 실종사건 수사관들이 범죄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의 비정상적인 반응을 정상적인 반응으로 착각하여 수사에 혼선을 일으킨다. 피해자나 그 가족은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의 영향으로 외형상으로는 너무나 태연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관은 그 가족의 외형상 드러난 점에 집착하여 수사하게 된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도 아동의 경우에는 전혀 엉뚱한 허위의 진술이나 제보를 하기 때문에 그 진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확인한 것만 수사에 참고해야지 무조건 믿고 수사에 반영할 경우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⁵⁸⁾

실종인 가족들은 국내 실종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꼽는다. 이는 실종사건 관련 수사 전문가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다. 반면 해외 선진국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수사전문가를 통한 첨단 장비 구축 운영과 전문가를 통한 각 기관 간 체계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국가실종착취아동센터는 5개의 지부에 250여 명이라는 대규모의 전문적인 인원이 실종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또 실종사건 전문 경찰관을 상대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종사건 사례 분석을 통해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찰청에는 실종 전문가만 100명이나 있다고 한다. 또한 경찰업무지원기관을 설립해 전문적인 경찰을 대상으로 실종사건 관련 훈련 및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이 기관 산하 실종 수사 전담팀은 실무전략 분석과, 연계지원과, 정책전략분석과 등으로 구분되는데, 경찰전문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⁵⁹⁾

이처럼 실종사건 전문 인력을 두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58) 임재식, 앞의 논문, 165면.

59) 노컷뉴스, 2010. 10. 24.

그나마 생긴 실종사건 전담팀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는 실종사건도 전문 경찰수사관이 맡아야 하며, 전문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여 민간 전문가 영입하여 실종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V. 실종아동 사건 관련 처리 대책방안

1.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보호시설의 적극적인 수색

최근 경찰청 내부자료에 의하며, 전국의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시설들은 신고된 4,022개와 미신고된 98개를 합쳐서 모두 4,12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표 2] 전국 보호시설

2010. 10. 31 기준

구 분	계	아 동 보호시설	정 신 보건시설	장 애 인 시 설	노 인 복지시설	부 랑 인 시 설	기 타
총 계	4,120	602	384	792	1,970	191	181
신 고	4,022	598	382	764	1928	181	169
미 신고	98	4	2	28	42	10	12

※ 2010. 10. 31 경찰청 내부자료.

구체적으로 아동 보호시설은 602개, 정신 보건시설은 384개, 장애인

시설은 792개, 노인 복지시설은 1,970개, 부랑인 시설은 191개, 기타의 시설로는 181개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도 98개가 있어 이곳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색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경찰의 여성청소년계의 실종전담팀과 각 지방자치단체·실종자 가족 등과 힘을 모아 합동으로 수색반을 편성하여 수색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신규입소 및 보호시설의 호적 발급자 등 유전자와 지문 등을 적극적으로 채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실종된 아동을 보호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의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2. 엠버경보시스템(Amber Alert System)의 활성화

아동 실종, 유괴사건 발생시 방송, 이동통신사, 인터넷업체 등 다양한 기관의 인프라망을 활용해서 공개수배를 실시하는 엠버경보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실종아동 발견 및 아동무사 귀가 등 범죄예방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공공전파성과 홍보효과가 큰 주요 방송사, 신문사 등을 포함 엠버경보 발령 매체를 대폭 확대하고,⁶⁰⁾ 엠버경보시스템을 통한 발령 매뉴얼을 자세하게 제작하여 유괴경보시는 즉각 방송매체를 집중 활용토록 하는 등 엠버경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은 아동의 실종 및 유괴의 경보의 경우는 부모가 동의를 해

60) 경찰청과 CBS는 실종아동 등(14세미만 아동, 정신지체장애인, 치매노인) 및 부녀자(14세 이상 여성)의 납치·유괴(의심) 범죄예방과 실종 조기발견을 위해 엠버경보 서비스를 체결하여 신속한 엠버경보 발령을 위해 앞으로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노컷뉴스, 2010. 11. 6.

야 실종경보를 발령한다. 그 이유는 실종 또는 유괴된 아이의 얼굴이 방송을 비롯한 매스컴을 통하여 공개될 경우, 아동 유괴범이 자신의 범죄 행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납치한 아동을 살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및 유괴경보를 부모의 동의없이 즉시 발령해 조속히 실종아동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민·관의 원활한 협조·공조체제 구축

실종수사의 1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지만, 유관 기관과의 협력 없이는 실종 사건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의 국가실종착취아동센터는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해 법무부와 국무부, 청소년 사법 및 비행방지센터 등 다수 정부기관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실종아동을 찾는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도 경찰 산하 전국실종아동 서비스(NMCS)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와 실종아동 관련 민간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 실종사건의 해법을 찾고 있다.

영국에서는 실종사건 발생시 경찰이 실종아동 전문 민간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행정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 사이에 실질적인 정보 교류가 드문 실정이다. 또 아동보호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실종전문기관에 신상카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지만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보호 시설이 적지 않다.

아동 실종은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수적인 만큼 각 기

관에 흠어져 있는 업무를 통합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실종자 찾기 종합센터 또는 통합전산센터 등의 설치 필요하다.⁶¹⁾

4. 실종아동을 위한 민간 조사관제 도입

실종 아동을 찾기위해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에서, 실종자 가족들 중 일부는 민간 조사기관을 이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흥신소·심부름센터로 대표되는 이들 민간 사설기관은 실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사용내역 같은 인적 정보를 기초로 찾기에 나선다. 이와 함께 20개 가량의 외국계 탐정업체들도 한국에서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경찰법은 '탐정'이란 직업과 경찰 이외의 민간 조사기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모두 불법적인 행위이다.

이처럼 실종자 가족들은 경찰력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해 아예 민간조사관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자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이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인탐정인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면 실종 아동을 비롯한 가출 성인을 찾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실종자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경찰의 부족한 수사 인력의 보완책으로 민간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면 실종아동을 비롯한 실종자들을 지금보다는 더욱 많이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1) 노컷뉴스, 2010. 10. 24 일자.

5. 아동관련 주변 시설에의 광범위한 CCTV 설치

실종아동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범인의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학교 근처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통해 학교 근처 아동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유괴나 실종 사건에 대해서 범인의 이동경로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2008년 6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 관련 4개의 시설주변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다. 동법 제9조의2 ①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보호구역의 개념 및 공간적 범위 그리고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정책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최근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동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아동 실종, 유괴 등 아동대상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대답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그 외에도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의 순찰강화 및 성범죄 전력자의 전자팔찌 착용 등이 범죄예방의 효과적이라고 나왔다.⁶²⁾

따라서 아동관련 주위인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에 아동 실종, 유괴 등에 대한 범죄예방 차원에서 광범위한 CCTV 설치와 이

62) 이경훈·안은희, 아동대상 범죄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22호), 경찰대학, 2010, 149면.

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6. 스마트 폰을 이용한 실종아동 찾기

미국의 한 아동아동전문가에 따르면, ‘낮선 사람이 아이를 유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놀랍게도 35초면 된다’고 한다. 즉 아직까지 아동실종이나 유괴 사건의 예방시스템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경찰청은 스마트폰(smart phone)⁶³⁾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실종아동 검색 및 신고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도록 「182센터 모바일 웹」을 구축하여 2010. 10. 14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모바일 웹으로 아이를 보호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으로 182센터에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실종아동 검색도 언제나 가능해 실종아동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실종된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을 신속히 발견하지 못할 경우 교통사고·익사 등 안전사고 또는 성폭력 등 2차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실종 예방 및 발견을 위해 182센터와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운영하여 실종 상황전파 및 장기실종아동 홍보 등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경찰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실종아동 검색 및 신고가 가능한 182센터

63) 휴대폰에 PDA(개인휴대단말기)와 여러 디지털기기 기능을 한데 묶은 단말기이다. 스마트 폰은 계산이나 정보 저장, 검색 기능을 갖춘 휴대형 컴퓨터의 일종인 PDA와 외형이 비슷해 PDA 폰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PDA폰 보다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폰은 전자수첩을 모태로 무선통신 기능을 넣은 PDA와 달리, 음성통화 위주의 일반 이동 전화에 데이터 통신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주로 이동전화 단말기 생산업체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스마트 폰은 휴대폰 기능은 물론 TV 등 동영상 서비스와 카메라, 캠코더, MP3 기능에 무전기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다기능 지능형 복합단말기’ 라고도 부른다.

모바일 웹을 구축, 운영하여 국민 접근 편의성 및 실종아동 발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82센터 「모바일 웹」은 ‘실종아동검색, 실종아동신고, 182트위터, 전국 보호시설 검색, 실종·범죄예방, 182센터 소개’ 등 6개 메뉴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 4] ‘실종아동검색’은 아동, 지적장애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기능으로, 검색시 아동·지적장애인으로 세부 분류가 가능하고, 이름 또는 신체 특징으로도 검색도 가능하다. 아동,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거나 실종아동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시간 비교·검색으로 실종아동 등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4] 실종아동 상세 검색 화면



※ 경찰청 내부 자료, 2010. 10.

또한 실종아동신고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실종 또는 보호시 실종 아동신고를 통하여 실시간 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현장에서 찍은 사진 또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함께 전송하여 실종아동 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놀이동산,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의 사진을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전송된 사진은 182센터에서 접수 후 전파하여 경찰의 찾기 활동에 활용하게 된다.

[그림 5] 실종아동 신고 및 모바일 신고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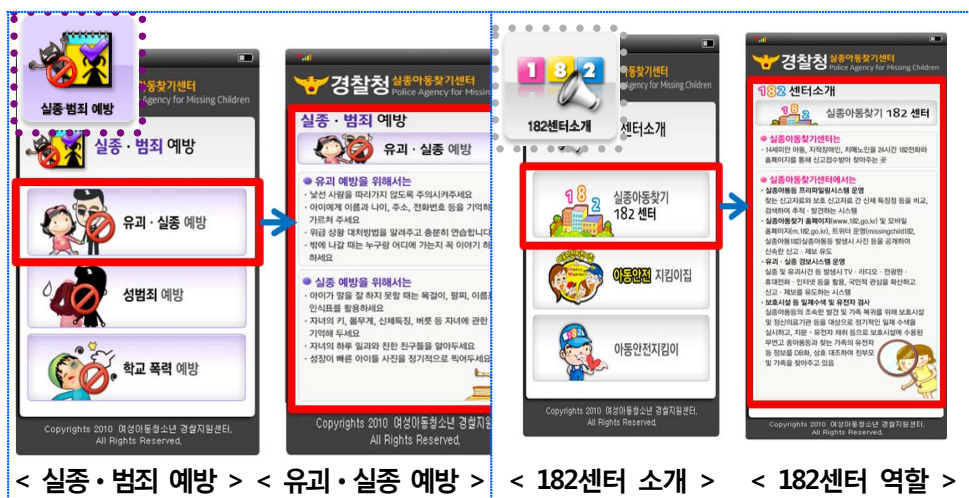


※ 경찰청 내부 자료, 2010. 10.

아래 [그림 6]에서와 같이 ‘실종·범죄예방’ 182센터는 유괴·실종예방, 아동성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 3가지로 구성, 범죄 예방법 및 진단법, 대처요령 등을 소개하고 있다. ‘182센터 소개’에서는 실종아동등

예방 및 발견을 위한 182센터의 임무와 아동을 보호하고 경찰에 연계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퇴직경찰과 노인회원으로 범죄취약지를 순찰하는 아동안전지킴이 3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림 6] 유괴·실종예방 및 182센터 소개



※ 경찰청 내부 자료, 2010. 10.

마지막으로 보호시설 검색은 전국 아동, 장애인 등 보호시설을 시설명 또는 지역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실종가족 뿐 아니라 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관서에서도 보호시설 검색을 통해 실종아동에 대한 신속한 인계 및 수색이 가능해진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추어 스마트폰으로 실종아동등 검색, 신고가 가능한 182센터 모바일 웹 구축을 통하여 대국민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며,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국민 중심의 치안인프라 구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이제 서서히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스마트 폰을 이용한 실종 및 유괴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시간으로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7. 전자태그 시스템의 도입

아동안전 확보를 위해 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자태그 시스템이라 함은 어린이의 성명, 연락처 등 학생의 신상정보가 내장된 전자태크를 가방에 부착하여 학교, 통학로, 놀이터 등에 설치된 감지센서를 통해 학생들이 통행시 촬영된 사진 등을 보호자 휴대전화로 전송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일본의 총무성에서 아동 실종 및 유괴사건이 빈발하는 등을 이유로 아동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아동보호 정책 공모를 통해 전자태그를 이용한 등·하교 정보 송신 시스템을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요코하마(橫濱, Yokohama)시의 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세계 일류의 IT 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위의 일본경찰이 운영하는 전자태그 시스템의 자료 수집과 운영방식, 효과,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 및 IT전문가 등과 협조하여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해 전자태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8. 아동실종 신고번호(182)의 적극적인 홍보

현재 경찰청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아동, 가출인 등 신원불상자의 실종

신고와 보호신고를 실시간 비교 검색을 통해 신속한 발견과 사후 조치를 하고자 실종아동찾기센터(182)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이 실종되면 우선 국번없이 182번을 통해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전산망에 모두 등록되어 해당 경찰서에 지시하여 적극적인 수색, 수사로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종자의 가족들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가 아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실종아동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파출소에서는 즉시 실종아동 찾기센터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산등록 및 해제 등의 관리는 182 실종아동찾기센터로 통합·관리되어 보다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전제는 '182' 실종 신고번호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182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114', '119', '112' 번호 등의 긴급전화는 이제 전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번호이다. '182'도 '긴급실종자를 찾는 번호'라는 인식이 전국민들에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실종아동 발생시 182로 바로 신고 접수를 하면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색, 수사 한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 언론, 방송 등은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는 말이 있다. 아동은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이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아동과 그 부모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고통을 주는 범죄이다. 특히 실종아동과 관련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부모는 우리 사회가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공존의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 경찰의 실종아동에 수사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종아동을 비롯하여 실종자를 수사하는데 미비된 입법적인 제도적 문제와 경찰 수사인력과 전문가의 부족 문제, 아동 실종사건에 관한 협조 및 공조체제의 미비 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더불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유관기관은 보호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수색을 수시로 해야 할 것이다. 실종자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실종된 아이를 찾기위해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해도 아이를 안보여주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DNA를 전산화 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엠버경보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경찰 수사인력 증원이 어려우면 민간조사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관련 주변시설인 학교, 유치원, 놀이터 등에

광범위한 CCTV를 설치하여 아동의 유괴, 납치 등을 예방하고, 점차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갖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실종 신고번호(182)의 적극적인 홍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시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실종된 아이가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대책방안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아이가 실종되면 부모의 70~80%는 직장과 사업을 팽개치고 전국을 떠돌며 찾아 헤매고, 고통속에서 술에 의존하고, 실종 아동에 대한 책임 문제로 인하여 부부간의 싸움으로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하기도 한다고 한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실종아동 검색을 살펴보면, 실종된 많은 어린아이들의 사진을 비롯한 신정정보가 나온다.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의 입장에서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파괴되어가는 실종된 부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게 된다. 실종아동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종된 자식을 둔 그들을 아픔을 얼마나 이해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본 연구가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데 경찰 수사 및 정책, 법제도를 입안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경찰청, 2010 경찰백서, 경찰청.

_____, 2009 경찰백서, 경찰청.

_____, 실종아동찾기 관련 통계, 경찰청, 2007.

_____, 미국·캐나다의 미아 찾기 시스템 보고서, 경찰청, 2004.

고경화의 외 10인, 실종아동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

강은영, 아동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김용화, 한국의 살인범 Profiling 모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상균, 실종사건처리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범죄심리학회 학술세미나, 2006.

김상호, 엠버 경보 운영에 대한 주요 쟁점과 분석, 韓國公安行政學會 報(제17권 제2호 통권 제31호), 2008. 6.

김성천 외2, 아동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실종아동전문기관 개관 2주년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복지재단, 2007.

김용화, 한국의 살인범 Profiling 모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종우, 실종아동 찾기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2006년 아시아대회 아동 권리와 가정위탁, 2006.

김형중, 아동실종사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시민 윤리 학회보(제23집 1호), 2010.

박은미, 효과적인 미아찾기 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 한국복지재단 어

- 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개서 15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2002.
- 류상근, '눈뜬장님' 실종아동법에 애타는 부모 마음, 월간119 안전 NEWS(통권18호), 2007년 4월.
-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안), 보건복지부, 아동권리팀, 2006.
- 실종아동전문기관, 해외연수보고서: 해외 실종아동 관계기관 방문, 한국복지재단, 2006.
- 윤선희, 국내 실종아동 대책 허점투성이, 주간한국(통권2216호), 2008. 4. 1.
- 윤주환, 失蹤아동 부모들의 애타는 호소, 月刊朝鮮(29권 10호 통권343호), 2008년 10월.
- 이경훈 · 안은희, 아동대상 범죄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22호), 경찰대학, 2010.
- 이동훈, 실종大國, 한국의 실태, 주간조선(통권2042호), 朝鮮日報社 2009.
- 이윤호, 아동 실종사건의 효과적 처리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09, 10.
- 林在植, 兒童 失蹤事件의 警察 搜查上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9.
- 조병인, 아동상대 범죄(납치, 유괴, 성관련) 종합대책, 수사연구, 2008. 5.
- 전학선, 실종아동 관련 입법정책, 외법논집 제2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07. 11.
- 정익중, 한국의 실종아동,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어린이재단 실종아동 전문기관, 2006.
- 표창원, 어린이 대상 범죄(실종, 유괴 및 성폭행) 치안대책, 2008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8

II. 외국문헌

高村 茂 ·桐生正幸 共著, 프로파일링とは何か(東京: 日本科學警察研究所, 2000.

Bartol R. and Anne M. Bartol, Criminal Behavior - A Psychosocial Approach, 8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2008.

John Ashcroft, Deborah J. Daniels, J. Robert Flores, A Family Resource Guide on International Parental Kidnapping. Washington, DC: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OJJDP), U. S. Department of Justice, 2002.

Marlene L. Dalley, Jenna Ruscoe, The Abduction of Children by Strangers in Canada: Nature and Scope, National Missing Children, 2003.

Patricia M. Hoff, Esquire, Family Abduction: Prevention and Response (Fifth Edition), Virginia, U. S.: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2002.

III. 언론 및 인터넷 웹 사이트

국민일보, 얼굴 변환 프로그램 도입 재구성, 2009. 11. 2.

경향신문, 26년만에 아들 살해범 밝힌 지명수배소 MC, 2008. 12. 25.

동아일보, 포천 여중생 피살 수사-동두천 끌고간 20, 30代 남자 3명 추적, 2004. 2. 9.

매일경제, DNA검사 덕에...15년만에 아들 찾아, 2009. 3. 17.

- 연합뉴스, 어린이 납치 대처 이 정도는 돼야..., 2010. 10. 7.
- 조선일보, Why 흔적도 단서도 안개속..., 2008. 1. 27.
- 한국일보, 포천 여중생 3개월째 실종, 2004. 2. 2.
- 연합뉴스, 양서 초등생 2명 일주일째 실종, 2007. 12. 31.
- _____, 수원 암매장 여아는 안양 실종 초등생, 2008. 3. 14.
- _____,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유력 용의자 검거, 2008. 3. 16.
- _____, 어린이 납치 대처 이 정도는 돼야..., 2010. 10. 7.
- EBS, 아동범죄, 미스터리의 과학 3부(우리아이 어떻게 지킬것인가?),
2009. 7. 29 방영.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 www.182.go.kr
- 실종아동전문기관, www.missingchild.or.kr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www.child.seoul.go.kr
- 대한천태종복지재단 실종아동 찾기센터, www.chentaeh.org/job/sahoi/mia/mia.htm
- 도연아 어딴니 <http://cafe.naver.com/dh1004love.cafe>
- 보건복지가족부 www.mohw.go.kr <http://www.fmca.kr/>
- 실종아동찾기협회 www.fmca.kr/
-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www.182.or.kr
-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http://82come.co.kr/come>
- 실종어린이 국제센터, <http://www.icmec.org>
- ChildFind, www.childfind.ca
- ChildSeekNetwork, www.childseeknetwork.com
- Missing Children Awareness Foundation, www.mcafinc.org

Missing Children Society of Canada, www.mcsc.ca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NCMEC), www.missingkids.com

National Incidence Studies of Missing, Abducted, Runaway, and
Thrownawy Children(NISMART), www.ncjrs.gov

NorthAmerica Missing Chlidren Association, www.namca.com

Project Safe Child, www.projectsafechild.org

Team Hope, www.teamhope.org

Vanished Children's Allianceh, www.vca.org

책임연구보고서 2010-25

경찰의 실종아동 수사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201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영 식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